

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제 517 호
------	---------

2017년 5월 15일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7년 4월 27일

나. 제 안 자 : 정정희 의원 외 8인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5월 2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(2015년 5월 15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윤지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,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토록 함.(안 제3조)

-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체계적 예방·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함.(안 제4조)
-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를 위하여 「전문인력 양성 교육」, 「교육·홍보」, 「안심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」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이나 해당 시·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송정명)

- 본 조례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아토피부염, 알레르기 비염, 천식 등 아토피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민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행·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임
-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주요 알레르기 질환의 진료 환자 수가 893만 명이며(표-1), 진료비는 연간 7,529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(표-2), 우리도의 경우 100만 명당 진료인원은 18,359명이며, 진료비는 1인당 299,749원(증가율 4.9%)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.
- 특히, 아토피질환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, 청소년 및 노인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될 전망이므로 아토피 질환의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지원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<표-1 연도별 주요 '알레르기'질환 진료인원 >

(단위 : 천명)

구 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계	8,844	8,949	9,008	8,881	9,208	8,938
알레르기 비염	5,557	5,736	5,942	6,050	6,454	6,341
천식	2,234	2,186	2,083	1,836	1,792	1,664
아토피 피부염	1,053	1,027	983	995	962	933

<표-2 연도별 주요 '알레르기 질환' 진료비 증가 추이>

(단위 : 백만원 %)

구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증가율 ('10년대비 '15년)
계	717,571	728,924	697,053	695,926	748,761	752,904	4.9
알레르기비염	321,259	338,244	346,703	364,777	410,768	419,221	30.5
천식	331,846	326,000	290,670	266,888	269,786	263,303	-20.7
아토피	64,466	64,680	59,680	64,261	68,207	70,380	9.2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생 략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집행부 의견 요지

○ 조례제정 적정

7. 심사 결과

○ 원안가결 (재석위원 만장일치)

8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, 생활환경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아토피질환”이란 외부항원에 대하여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다음 각 목의 질환을 말한다.
 - 가. 아토피성 피부염
 - 나. 천식
 - 다. 알레르기성 비염 및 결막염
2. “아토피질환자”란 아토피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충청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아토피질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충청남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소재 아토피질환 관계기관·단체 및 법인(이하 “기관·단체 등”이라 한다)은 도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.

③ 모든 도민은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,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.

제4조(관리계획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체계적 예방·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관리계획에는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표 및 추진방향
2. 제5조의 추진사업
3. 기관·단체 등과 협력 및 기반 구축
4. 교육·홍보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과적 수립 등을 위하여 해당 시장·군수와 협의하거나 기관·단체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·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추진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추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전문인력 양성 교육
2. 교육·홍보
3. 안심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
4.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이나 해당 시·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(이하 “보조금” 이라 한다)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·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(사후관리) 도지사는 해마다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의 지원 등에 반영해야 한다.

제7조(준용) 보조금의 지원신청·교부·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「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